

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2. 12. 24.(월) 14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
김충식 부위원장

홍성규 상임위원

김대희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○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

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○ 제68차 회의의 회의록 및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⑥ 의결사항

가. SK텔레콤(주), (주)KT와 (주)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- (2012-70-302 ~ 304)

-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SK텔레콤(주), (주)KT, (주)LG유플러스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, SK텔레콤(주), (주)KT, (주)LG유플러스가 '12.7.1.~12.10일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신규모집 금지 등 '시정조치'와 '과징금(SKT 68.9억원, KT 28.5억원, LGU+ 21.5억원)' 부과를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조사결과

- '12.7.1.~12.10일 기간 중 이통 3사의 전체 가입 건수 1,062만건(기기변경 가입건 포함)중 47.4만건을 분석한 결과
-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(27만원)을 초과하여 지급한 위반율은 LGU+ 45.5%, SKT 43.9%, KT 42.9% 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

② 근거법령

-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[별표 4] 5호 마목 1)은 “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”하는 행위를 금지

③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

< 시정조치 명령 >

- (1) 금지행위의 중지 : 가입자(기기변경 가입자를 포함)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
- (2)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: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이통 3사의 사업장, 대리점에 10일간 공표
- (3) 업무처리절차 개선 :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▲ 가입신청서에 단말기 출고가할부원금선납금·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고지·전산관리하는 개선 방안 마련, ▲ 신규 모집 금지 기간 동안 영업정책, 판매현황, 가입자 현황 등을 일일 또는 주 단위로 방통위에 제출 ▲ 온라인상에서의 불편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적발·제재 하는 등에 대하여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

(4) 시정명령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보고 :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상의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통위에 제출하고,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

(5)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(총 66일) : LGU+ 24일, SKT 22일, KT 20일을 부과하여 '13.1.7일 LGU+부터 이통 3사 순차적으로 실시하되, 구체적인 일정은 사업자와 협의 후 최종 결정

< 과징금 부과 >

- 과징금 부과(총 118억 9천만원) : SKT 68.9억원, KT 28.5억원, LGU+ 21.5억원

[7] 보고사항

가. 「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o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를 재책정을 위한 「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」(고시) 일부개정안을 백기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o 주요내용

① 지상파방송사업자 : 징수율 인하(7.3%)

- (인하사유) 지상파방송사업자의 '12년 방송광고매출 감소 등 어려운 경영상황과 지상파의 높은 분담금 부담을 고려

- (인하수준) 방송사업매출액('09~'11년) 대비 지상파사업자의 분담금 징수비중(2.33%)을 전체사업자의 평균 징수비중(2.16%) 수준으로 인하, 이는 현재의 지상파 분담금 징수율을 7.3% 인하하는 것임

·KBS·EBS : 징수율 3.17%에서 0.23% 인하한 2.94% 적용

·MBC·SBS : 징수율 4.75%에서 0.35% 인하한 4.4% 적용

·지역방송 : 징수율 3%에서 0.22% 인하한 2.78% 적용

·라 디 오 : 징수율 2.5%에서 0.18% 인하한 2.32% 적용

- (인하효과)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분담금 부담이 연 66억원(2011년 전체 분담금 1,832억원의 3.6% 수준) 줄어들 것으로 전망

② 위성방송사업자 : 1% → 1.33% 징수율 인상(33%)

- (인상사유) 위성방송사업자(스카이라이프)의 개선된 경영상황과 동일한 방송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

- (인상수준)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에 비해 낮은 분담금 징수율을 적용받고 있으나,
- 영업이익률이 낮은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행 징수율 1%에서 0.33% 인상한 1.33% 적용
- (인상효과) 징수율 인상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의 분담금 부담이 연 1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③ 기타 방송사업자 : 현행 징수율 유지

- 사업자의 경영상황, 향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지, 방송사업자의 디지털전환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현행 징수율 유지

o 향후 계획

-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: '12. 12월 하순부터 20일간
- 고시 개정안 규제심사(총리실) 및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(기재부) 심사 : '13. 2월 중순
- 고시 개정안 위원회 의결 : '13. 2월 하순

나.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방안에 관한 사항

- o 정부의 방송콘텐츠 분야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사업자간 경쟁유발로 방송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「등록 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방안에 관한 사항」을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o 주요내용

① 평가 대상 사업자

-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콘텐츠의 기획, 제작, 유통을 주된 사업분야로 하는 방송사업자 중 방송평가를 받지 않은 일반등록 대상 방송사업자(총 192개)

② 평가항목

- 제작역량 구성요인인 자원 경쟁력, 프로세스 경쟁력, 성과 경쟁력을 총 14개 항목으로 세분해 평가
- (자원 경쟁력) 콘텐츠 기획, 제작, 유통 과정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경쟁력으로 ①콘텐츠 인력 전문성, ②콘텐츠 인력 개발, ③콘텐츠 인력 보상, ④자기 자본, ⑤제작비, ⑥콘텐츠 지적재산권 평가
- (프로세스 경쟁력) 콘텐츠를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보유한 경쟁력으로 ⑦신규 콘텐츠 제작, ⑧신기술 콘텐츠 제작, ⑨국내시장 유통 역량, ⑩해외시장 유통 역량 평가

- (성과 경쟁력) 콘텐츠를 통해 창출한 경제적,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의 경쟁력으로 ⑪국내 시장 수익성, ⑫해외 시장 수익성, ⑬콘텐츠 내용 심의규정 준수 여부, ⑭콘텐츠 수상실적 평가

③ 평가항목별 배점(총 1,000점)

- 경쟁력 요인별 중요도를 고려하여, 잠재적 역량을 평가할 있는 '자원 경쟁력'에 350점, 상대적인 중요도가 낮은 '프로세스 경쟁력'에 250점, 사업자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'성과 경쟁력'에 가장 높은 400점 부여

④ 평가결과의 활용

-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, 중장기적 진흥정책방안 개발에 활용
- 매년 축적되는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, 기초자료를 축적함
- 정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시 근거 자료로 활용
 - ※ 허가·승인 사업자의 경우, 방송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제작지원제도 심사시 반영
- 평가결과를 공표하여 시청자 및 SO의 채널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
- 방송대상에 “콘텐츠 제작역량” 부문을 마련하여 콘텐츠 제작역량 우수 사업자에 대한 시상을 정례화
- 규모대비 제작역량을 비교분석하여 중소콘텐츠 제작업체 육성에 기여

⑤ 결과 공개

- 익년 3월초에 매우우수, 우수, 보통, 미흡, 매우미흡 등 5개 군으로 등급 공개

⑥ 평가 실시

- (실시 주기) 매년 실시
- (평가대상 기간)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해당 평가년도의 직전 연도 자료를 대상으로 평가
- (수행기관) 방송평가제와 같이 외부의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평가지원단이 되어 평가수행

○ 향후 일정(안)

- 평가실시: '12.12.~'13.2월
-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및 공개: '13.3월

다.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

- 최근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LTE용 광대역 주파수를 내년 중에 할당하는 「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추진계획」을 박윤현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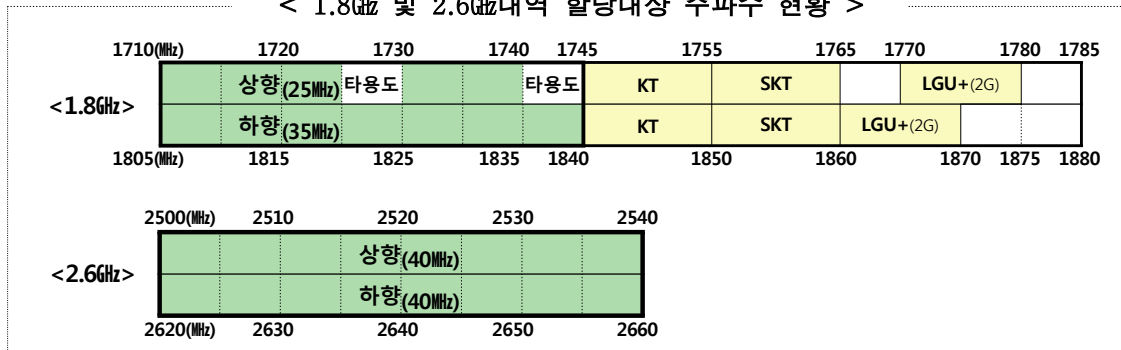
○ 할당방안

현재 확보 가능한 1.8GHz대역 60MHz폭 및 2.6GHz대역 80MHz폭 등 140MHz폭을 대상으로, 광대역 사업자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

- ① 할당목표 - 2.6GHz 및 1.8GHz대역에서 광대역 블록 최대화(3~4개)
- ② 할당대상 - (2.6GHz대역) 상/하향 20MHz폭 블록 2개
 - (1.8GHz대역) 상향 15MHz폭 및 하향 20MHz폭 블록 1~2개

※ 광대역 폭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자의 재배치도 검토

< 1.8GHz 및 2.6GHz대역 할당대상 주파수 현황 >



○ 향후계획

향후 사업자 및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, 경매규칙을 포함한 세부적인 할당 계획을 마련

-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할당계획 마련 : '13. 1월
- 할당계획(안) 위원회 의결·공고 및 고시 : '13. 2월
- 할당신청 접수, 할당심사(또는 경매) 및 할당 : '13. 4월

8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2. 12. 28(금).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6:10)